

보도해명자료

보도 일시	2022. 10. 14.(금) (배포 후 즉시)	배포 일시	2022. 10. 14.(금)
담당 부서	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전략기획실	실장	송재현 (031-929-0824)
		팀장	백경호 (031-929-0946)

원장을 위해 소송지원 규정을 만들어 소급 적용한 것처럼 보도한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님

2022.10.14. 아주경제 <院長 소송 юри자 소송비 지원규정 신설... 합의금·변호사비까지 대납> 지면기사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해명드립니다

□ 기사 내용

- ① 한국수자원조사기술원 산업재해와 관련해 원장이 검찰 조사中 소급적용이 가능한 소송비용 지원규정을 신설
- ② 원장의 변호사비와 피해자 유족 합의금 수천만원을 대납

□ 해명 내용

< ①에 대하여 >

- 기술원은 신생기관으로 임직원이 업무 수행 중 민·형사사건에 연루 될 경우 체계적인 소송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
- 임직원이 적법한 업무수행 중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에도 소송비용 등을 개인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지 않아 다른 기관들의 동일한 규정 및 변호사의 자문의견을 참고하여 소송지원 규정을 신설함
- 이 규정은 원칙적으로 최종 확정 결과 및 과실 여부를 기준으로 외부변호사(2인)가 포함된 소송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해 지원 및 회수하도록 명시하여 부당 지급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함

- 또한, 이 규정의 적용례는 다른 기관들의 규정을 참고하여 시행일 이후 판결, 처분 등 최종 결과가 확정된 사건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음

< 환경부 산하기관 소송지원 규정 사례(부칙 적용례) >

◆ 한국환경공단 임직원 소송지원 규정(제정 2015.06.26.)

부 칙 <규정 제90호, 2015.6.26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6월 26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종판결이 확정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◆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임직원 소송지원 규정(제정 2018.11.01.)

부 칙 <2018.11.01.>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규정은 시행일 이후 최종판결이 확정된 사건부터 적용한다.

- 마치 원장을 위해 소송지원 규정을 신설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

< ②에 대하여 >

- 「산업안전보건법」의 양벌규정에 따라 원장은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을 범무법인에 개인비용으로 지불하고, 최종 '협의 없음'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지원받았음

※ 변호사 선임비용(550만원/1,100만원), 성공보수금(275만원/550만원)

- 합의금은 유족과 협의한 금액 및 지급시기를 고려하여 규정에 따라 소송지원위원회의 심의·의결을 통해 유족에게 선지급하였음
- 원장의 변호사비와 피해자 유족 합의금을 대납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